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청 소관 1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동산문화재를”을 “동산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을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으로, “동산문화재를”을 “동산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을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

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로, “문화재인”을 “문화유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을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동산문화재조사분석 결과가”를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로, “동산문화재조사분석 결과와”를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로 한다.

제3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정의)”를 “(매장유산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을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범위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각각 “매장유산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에”를 “매장유산에”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각각 “매장유산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가”를 “임시지정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이 있는 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제2장의 제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며, 같은 목 2)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2) 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 관련”을 “매장유산 관련”으로,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을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보존을”을 “국가유산 보존을”로, “문화재 보존 조치”를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보존”을 각각 “국가유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 위원회의”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7조제3항 중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를 “문화유산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훼손”을 “매장유산을 훼손”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을 “매장유산을 발굴”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을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를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장문화재

의 가치: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매장유산의 보존”으로,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를 “매장유산의 내부·외부”로, “매장문화재 주변”을 “매장유산 주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을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를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를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한다.

제14조의3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을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을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각각 “매장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 소유권”을 “국가유산의 소유권”으로,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로서”를 “국가유산으로서”로,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를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을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로서”를 “국가유산으로서”로,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을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을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공고)”를 “(매장유산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을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의 범위”를 “국가유산의 범위”로, “문화재의 관리”를 “국가유산의 관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는 “문화재조사”를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를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를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을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으로”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호 나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매장문화재”를 각

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와”를 “매장유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4조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을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와”를 “무형유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를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을 “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를 “국가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무형

문화재로서의”를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로,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를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무형유산의 보전”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을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을 “국가무형유산의 기능·예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

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가무형문화재”는”을 ““국가무형유산”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를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로,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를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2. 시·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를 “(국가무형유산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가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

가무형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를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을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를 “(시·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2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

산”으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5조(「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을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하는”으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을 “지정문화유산등의 관람료를 기준”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국가유산

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보호기금심의회”를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의 제목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유산교육:”으로, “실시하는 문화재교육”을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 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

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
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

제2조제5호 중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를
“(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각각 “지정문화유산
이나 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를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
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을 “(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정보체계”를 “문화유산정보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 정보가치”를 “문화유산 정보가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정보”를 “문화유산 정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정문화재”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해당하는 문화재”를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해당하는 문화재”를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방재”를 “문화유산 방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 피해”를 “문화유산 피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 방재”를 “문화유산 방재”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문화재교육 업무의 위탁)”을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1. 국가유산진흥원

제10조의5의 제목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전시”를 “문화유산 전시”로 한다.

제10조의6의 제목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을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각각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재 데이터”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0조의7제4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한다.

제10조의8의 제목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을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를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를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데이터의 이용”을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으로, “문화재데이터의 가공·활용”을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활용”으로 한다.

제10조의9의 제목 “(문화재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로 한다.

제10조의11의 제목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을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문화재재단”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각각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위원이나”를 “문화유산위원이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를 각각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문화재나”를 “문화유산이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제19조 중 “중요문화재로”를 “중요문화유산으로”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을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별”을 “문화유산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 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외곽”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행위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

호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9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각각 “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로,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등)”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정위원”을 각각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문화재 분야”를 “문화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정위원”을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각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외문화재재단”을 각각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국외문화재재단의”를 “국외문화유산재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을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를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을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를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일”을 “문화유산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문화재일”을 “문화유산일”로 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41조의5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로 한다.

제41조의6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41조의7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문화재를”를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

다.

제47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47조의3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 13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범위)”를 “(국가유산수리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26조(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제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 등”을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7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으로,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를 “국가민속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제12조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제한)”을 “(국가유산수리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을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일”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분야”를 “국가유산수리 분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를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

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을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호 중 “종된 문화재수리”를 “종된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를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를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로, “부분의 문화재수리”를 “부분의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미만인 문화재수리”를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국가유산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감리업자가”를 “국가유산감리업자가”로, “문화재수리로서”를 “국가유산수리로서”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를 “국가유산감리업자

에게”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 종류”를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나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로”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를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

다.

제19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문화재수리 과정”을 “국가유산수리 과정”으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제19조의4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를 “(국가유산수리 현장

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를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이상인 문화재수리”를 “이상인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이상인 문화재수리”를 “이상인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로

서”를 “국가유산수리로서”로,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를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원은”을 “국가유산감리원은”으로,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주문화재감리원”을 “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같은 호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를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을 “(국가유산감리원의 배

치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주문화재감리원 또는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상주국가유산감리원 또는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금액”을 “국가유산수리 금액”으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주문화재감리원이”를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로,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를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감리원으로서”를 “국가유산감리원으로서”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

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금액”을 “국가유산수리 금액”으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감리원 외”를 “국가유산감리원 외”로, “문화재감리원을”을 “국가유산감리원을”로, “문화재수리 기간”을 “국가유산수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미만인 문화재수리”를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미만인 문화재수리”를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감리원이”를 “국가유산감리원이”로, “문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를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로,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및 제 6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을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을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으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으로, “문화재감리원에게”를 “국가유산감리원에게”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을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을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등이나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을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각각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26조의2제1호나목 중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제2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
만원 이상인 실측설계”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
는 임시지정명승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
수리업자”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
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
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
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
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며, 같
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중
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30조의3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17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 18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 22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 24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 25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 26과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 27과 같이 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 규정」의 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제2호 본문 중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를 “건축유산분과위원

회:”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궁능유산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를 “동산유산분과위원회:”로, “유형문화재 중”을 “유형문화유산 중”으로, “유형문화재에”를 “유형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궁능유산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근현대유산분과위원회”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궁능유산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제5조제7호 단서 중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궁능유산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중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을 “근현대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궁능유산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를 “민속유산분과위원회:”로, “민속문화재에”를 “민속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본문 중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궁능유산

분과위원회:”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로 한다.

8.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10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

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11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역사·문화·문화재·도시계획·경관·지역개발”을 “역사·문화·국가유산·도시계획·경관·지역개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유산 관람료”로, “문화재 활용”을 “국가유산 활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제12조(「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13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를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 분야”를 “국가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 29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3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 시설의 종류란 커목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같은 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의 수리·복원·정비공사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

⑦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를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를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 자료

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⑪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공업의 화공란, 임업의 산림조경란 및 시설의 건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업	화공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
임업	산림조경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술

		(조경기술자, 식물 보호기술자)(12)	(조경기술자, 식물 보호기술자)(9)	(조경기술자, 식물 보호기술자)(6)	(조경기술자, 식물 보호기술자)(3)	(조경기술자, 식물 보호기술자)
시설	건축	건축사(5),국가유 산수리기술자(보 수기술자)(12)	건축사,국가유산 수리기술자(보수 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 술자(보수기술자) (6)	국가유산수리기 술자(보수기술자) (3)	국가유산수리기 술자(보수기술자)

⑫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
· 등록된 한옥

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5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⑮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42조의3제2항제1호의3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항입지 적합성 선정 요건란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로 한다.

⑱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⑲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 특성”을 “문화유산 특성”으로 한다.

㉔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6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㉖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㉗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4)가) 중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한다.

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별표 1 제2호의 자격 요건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㉖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㉗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㉘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란 제7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도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3호 중 “시·도 지정문화재”를 “시·도 지정문화유산, 시·도 자연유산”으로 한다.

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㉖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시·도자연유산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㉗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자연유산)

제32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1의 제2호제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

별표 3의2 제2호 및 같은 호 마목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사. 국가유산·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한없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일 것

별표 5 제3호어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한다.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를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로, “등록된 문화재”를 “등록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이”를 “문화유산등이”로, “문화재등의”를 “문화유산등의”로 한다.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중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을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로,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을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신고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③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③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식석공 중 가공석공 종류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문화재주택”을 “국가유산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임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8)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를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를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를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④③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자연유산

④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과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④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

④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구역

④⑦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반출 허가 등
별표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㉖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명승,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명승,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⑤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 구분란 1)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으로 하고, 같은 란 사목1)의 부담률란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2) 구분란 2) 중 “지방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⑤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가목(17)의 설치기준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㉔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機)·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보

호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물

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㉖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문화유산”을 각각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을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로 한다.

㉗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㉞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호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㉟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㊱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㊲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㊳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보호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물

㉓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으로, “따른 보호구역”을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종 중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별표 1 제2종 중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별표 1 제3종 중 제7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별표 1 제4종 중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⑥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문화재 발굴의”를 “매장유산 발굴의”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으로, “문화재수리 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도지정 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1) 시·도 지정·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 지정·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 지정·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1) 시·도 지정·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	---	---

⑥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⑥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⑥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㉓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한다.

㉖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 구분란 제5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140학점

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㉕ 향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㉖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보호구역

[별지 1]

[별표 1]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땅파기에 따른 지형 변형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등의 신축등

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건축물등을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며,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

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을 저해하는,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건축

물등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축물등은 다음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등이 아니어야 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는 가능하면 1)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나) 건축물등의 용도는 1)라)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전통 담장이나 녹지 등을 이용한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등의 신축 및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 5) 공중화장실이나 경찰, 소방, 방재 등을 위한 공용·공공용 건축물등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 6) 해당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큰 생활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 7)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다만,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할 가설 창고, 작업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

(1) 최고높이는 특별보존지구에서 5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7.5미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10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12미터)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특별보존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며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
을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 그 밖에 생활편익을 위해 신축하는 가설건축물

8)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
어야 하며, 같은 필지 내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

1) 층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
게 층수를 늘리는 경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5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층 이내에서 주변 건축물등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증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 지정지구의 건축물등을 다른 장소로 이축할 경우 이축 후 건축물등이 있던
토지를 주변의 표고(標高),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하여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땅고르기를 해야 한다.

3.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다. 기존 건축물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호로 변경하는 경우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 2)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정비·조사하기 위한 경우
-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위한 경우
- 5) 용수·배수 시설의 설치, 농도(農道)·임도(林道)의 설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을 위한 경우
-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매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
- 7) 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8)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땅깍기·흙쌓기·땅고르기(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10)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땅깍기 및 흙쌓기를 하면서 생긴 경사면 또는 절개면은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외장은 석재, 목재 등 전통형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가. 수목을 심는 경우 가능하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樹種)을 심어야 한다.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림막이 필요한 건축물등은 수목을 심어 그 건축물등을 가려야 한다.

다.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양호한 조망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 3)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 4)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에서 수목을 벌채하거나 조림(造林)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 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외래 수종을 벌채하거나 고유 수종을 심는 경우
- 7)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거나 심는 경우
- 8) 개별 사유지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미관 및 조경을 위해 수목을 벌채 또는 심는 경우
- 9) 급경사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토석류의 채취·적치

가. 토석류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어야 한다.
- 2)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 3)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토석류의 적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가목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2)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
- 3) 토석류의 적치로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적치의 목적을 달성한 후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7.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가. 가능하면 가로시설물에는 전통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로수는 고유 수종을 심어야 한다.
- 나. 포장재의 재질, 무늬, 색채 등이 전통성을 띠도록 하며, 보도(歩道)의 무늬는 해당 고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원색 계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주택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규모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규모는 6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의 행위

- 가.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깎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와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나. 특별보존지구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와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이 해당 영업내용 등의 표시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2) 광고물의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며, 원색 계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빛이 점멸하는 조명

나) 화면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조명

다) 원색의 조명

4) 광고물의 재질은 합성 및 인공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석재, 동판 등 전통적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 광고물의 서체는 전통적인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별지 2]

[별표 1]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와 그 분포지
 -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나. 퇴적구조: 연흔(鏈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분화구(噴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砂丘: 모래언덕), 해변(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pot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 가. 얼음골, 풍혈
 -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별지 3]

[별표 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1년 2년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1년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1년 2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7호	6개월 3개월

[별지 4]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 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국가유산 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 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 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 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 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5]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II.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지 6]

[별표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문화재청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유산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유산**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별지 7]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진

3.5cm×4.5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우리 선조들이 간직해 온 국가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공헌하여 대한민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증부에 기재합니다.

문화재청장 ○○○ 직인

[별지 8]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귀 단체는 우리 선조들이 간직해 온 국가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공헌하여 대한민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증부에 기재합니다.

문화재청장 ○○○

직인

[별지 9]

[별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문화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지 10]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보물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물이 제작한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나. 예술적 가치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다. 학술적 가치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4) 명확성: 명문(銘文: 쇠·비석·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건축문화유산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

	(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樓閣), 정자(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괘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4) 조적조군·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나. 기록문화유산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다. 미술문화유산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金石: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4) 공예: 도·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라. 과학문화유산 1) 과학기기 2) 무기·병기(총통, 화기) 등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 가 제작한 것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2)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 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나. 학술적 가치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 · 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 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 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 된 유적
	<삭 제>
	<삭 제>
국가 민속문화유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 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범회구, 봉납구(奉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지 11]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국보·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	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	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정원과 연못,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삭 제>
4.	<삭 제>
5.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 에 해당 문화유산 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비석·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 (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 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6. 보호물 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 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 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지 12]

[별표 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1. 미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기준	1) <u>문화유산</u>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u>문화유산</u>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추가기준	4) 희소성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	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u>문화유산적</u>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미술분야의 예시>

- 회화류: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 조각류: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 공예류: 금속공예, 목·칠공예, 도·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 서예류: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 석조류: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2. 전적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기준	1) 문화유산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문화유산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추가기준	4)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할 것
	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가, 제작시기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	장황(粧纒: 책이나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 또는 만든 것),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	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전적분야의 예시>

- 서책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 문서류: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서원 문서 등
- 서각류: 현판류, 금석각류[쇠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글자를 새긴 유형. 신도비(죽은 이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 선정비(어진 정치를 한 관리를 기리는 비), 묘비, 장생표(사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표지물)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3. 생활기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기준	1) 문화유산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문화유산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추가기준	4) 희소성	형태·기술·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	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생활기술 분야의 예시>

- 고고자료: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 민속자료: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 공예용구 등), 놀이·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 과학기술자료: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 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계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4. 자연사 분야

가. 공통기준 1) 및 2)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3)부터 5)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	기준	세부기준
공통 기준	1) 자연유산 가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것
	2) 자연유산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이 경우 해당 유물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머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예: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추가 기준	3) 희소성	종류·서식지·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4)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5) 시대성·지역성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자연사 분야의 예시>

- 동물류: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한다), 건조표본, 액침표본(액체 약품에 담가서 보존하는 표본) 등
- 식물류: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표본, 액침표본 등
- 지질류: 화석, 동굴생성물(중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漣痕: 물결 자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건열(乾裂: 땅이 갈라진 자국)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별지 13]

[별표 3의2]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 제2호	지정취소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 제2호	시정권고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 제2호	시정권고	지정취소

[별지 14]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10	10	10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100	150	200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3항제1호	150	200	300

사. <삭 제>				
아.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2호	100	150	200
자.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차.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5호	500	500	500
카.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3호	100	150	200
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100	150	200
파.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100	150	200
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7호	100	150	200
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4항제8호	100	150	200
더. <삭 제>				

[별지 15]

[별표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 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u>국가유산수리</u> 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u>국가유산</u>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薄石: 평평한 돌), 포방전(鋪方磚: 바닥에 까는 네모난 전돌) 또는 전돌(塼瓦: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는 행위 러. <u>국가유산</u> 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가. 제1호의 경미한 <u>국가유산수리</u> 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에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u>국가유산</u> 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지 16]

[별표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지 17]

[별표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2. 단청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단청개론, 단청보수실무
3. 실측설계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4. 조경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5. 보존과학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국가유산보존실무
6. 식물보호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식물보호실무

비고

“국가유산관련법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말한다.

[별지 18]

[별표 4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9조제2항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지 19]

[별표 6]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 나무다듬기)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단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변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이기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돌(塼: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옷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별지 20]

[별표 7]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국가유산수리업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의 중 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 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 청기술자 1명을 포 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 과 한식미장공, 번와와 공, 화공, 드잡이공(기 울어진 구조물을 해체 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 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전문국가유산 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 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 공, 세척공, 표구공 중 1 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 식목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실측설계사보	법인	－	사무실
	1명 이상	1명 이상	개인	－	

4. 국가유산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 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 측설계기술자 중 1 명과 실측설계기술 자, 보수기술자, 단 청기술자, 조경기술 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

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출 수 있다.

[별지 21]

[별표 8]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국가유산 수리업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시공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미장공사업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온돌공사의 시공

비고

위 표의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별지 22]

[별표 9]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2년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	3년
	라.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고인돌,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석탑(石塔), 석교(石橋: 돌다리) 등	5년
	나. 전탑(塼塔)	3년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欂栌: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덮는 것) 또는 개판(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이상의 기와지붕	3년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	3년
	2) 그 밖의 구조재	2년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1년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다듬은 주춧돌)	7년
	3)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5년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마.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바른)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는 길)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1년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판자 사이에 흙을 넣어 다진 담, 토(土)담, 전축(塼築)담(벽돌로 쌓은 담), 와편(瓦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	3년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덤) 2) 전축분(塼築墳: 벽돌을 쌓아 돌린 무덤) 3) 목곽묘(木槨墓: 나무덧널무덤) 다. 병풍석(屏風石)	2년 5년 3년 1년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속도랑), 배수로, 측구(側溝: 길도랑), 맨홀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鋪方塼) 2)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강회다짐(생석회 흙다짐), 혼합토 등	2년 2년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2년 3년
8. 조경·식물보호·밭갈지정비·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나. 식물 보호 다. 밭갈지 정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도금(鍍金), 탕화(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옷칠 등	2년 3년 2년 5년
9. 국가유산보호·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 위 표에 없는 **국가유산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별지 23]

[별표 10]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자.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타.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파.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바.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자.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24]

[별표 10의2]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국가유산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12. 준공 도면의 검토 및 국가유산수리 준공검사
13.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14.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15.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별지 25]

[별표 11]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국가유산 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비상주국가유산 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

[별지 26]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가. 집합교육: 문화재청장이 교육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에 출석하고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나. 이러닝교육: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단방향으로 수강

다. 자율교육: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3) 국내외 학회·학술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교육·연수·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토론·강연

4) 관련 협회·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설명회, 청문회 등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에 참여

비고

1.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50까지로 한정하여 인정된다.

2. 제2호다목의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시간·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27]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별지 28]

[별표 1]

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허가대상행위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2. 허가대상행위의 방법 및 결과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지형의 변형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것
4.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을 것

[별지 29]

[별표]

부속시설등(제13조제1항 관련)

시설	구분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 전통문화연구소,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 국가유산정책연구실, 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인문·사회계열	유적 발굴 실습실,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학술림, 전통조경 실습실, 고건축물(古建築物) 복원 실습장,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 건축문화유산 정보 분석교육센터
	예능계열	전통미술공예 실습실,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대시설, 전통기능교육센터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강당, 정보전산원,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 학생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보건진료소, 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	
비고: 대학원,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전문위원)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u>문화재</u> ,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4(전문위원) ① ----- ----- ----- <u>국가유산</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타당성조사) ① ----- ----- ----- ----- -----.
1. <u>문화재</u> (보호구역을 포함한 다)의 현황	1. <u>국가유산</u> ----- -----
2. <u>문화재</u> 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2. <u>국가유산</u>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u>문화재와 문화재</u> 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3. ----- <u>국가유산과 국가유산</u> -----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 ----- ----- ----- -----.
1. <u>문화재</u> (보호구역을 포함한 다)의 현황	1. <u>국가유산</u> ----- -----
2. <u>문화재</u> 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2. <u>국가유산</u>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u>문화재와 문화재</u> 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3. ----- <u>국가유산과 국가유산</u>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u>동산문화재를</u>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재	<u>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u>동산문화유산을</u> ----- ----- -----.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생략)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 -----

2. 동산문화유산 -----

3. (현행과 같음)

② -----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
-----.

③ 동산문화유산 -----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1. 동산문화재의 제작 연대·주체·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2. 동산문화재의 손상 원인, 손

--.

1. 2. (현행과 같음)

④ -----

동산문화유산 -----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

----- 국가유산
수리업자-----
-----.

② -----

-----.

1. 동산문화유산-----

2. 동산문화유산-----

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
른 조사·분석(이하 “동산문화
재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
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의 결과
2. 제1호의 결과에 따른 동산문
화재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 일정 등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의
온도·습도 등의 관리계획
4. 방화시설과 방범장치 등 동
산문화재 보안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
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
장 배치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
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
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③ -----
----- “동산문화
유산조사분석”-----
----- 동산문화유산
을 -----
-----.

④ -----

-----.

1.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2. ----- 동산문
화유산 -----

3. 동산문화유산 -----

4. ----- 동
산문화유산 -----
5. -----
-- 동산문화유산 -----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
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③ (생략)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① 법 제
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생략)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
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
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
호 ----- 문화
유산인 -----

② -----

동산문화유산-----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① ----

----- 국가유산수리업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u>동산문화재조사분석 결과</u>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 계획에 포함된 <u>동산문화재조사분석 결과와</u> 다른 경우 2. 3.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u>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u> ----- ----- <u>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u> ----- 2. 3. (현행과 같음)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 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 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 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 매장 유산이 ----- ----- “매장유산 ----- -----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	1. -----

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 매장유산이 -----

2. -----

----- 매장유산이 -----

3. 매장유산에 -----
----- 매장유산이 -----

4. -----
----- 매장유산이 -----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 시·도지정문화유산 -----
----- 임시지정문화유산이 -----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신 설>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

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이 있는 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8. -----
매장유산 -----

② ----- 매장유산 -----

--.

③ -----
----- 매장유산 -----

-----.

④ 매장유산 -----

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
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
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
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5-----
-----.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

-----.

-----.

1. -----
------(매장유산 -----

2. 3. (현행과 같음)

4. -----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관

----- 매장유산 -----

--

가. ---- 매장유산이 -----

나. -----

1) -----

----- 국가유산이 -

2) 매장유산 -----
----- 국가유산이 -

-- . -----
---- 매장유산 -----

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 (생략)

② 제1항제4호나목2)에 따른 매
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매장문
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
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
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조사단장, 책임조사
원 또는 조사원(책임조사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3. (생략)

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③ ~ ⑥ (생략)

-.

다. (현행과 같음)

② ----- 매장
유산 관련 ----- 매장유
산의 -----

-----.

1. ----- 매장유산

2. 3. (현행과 같음)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
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략)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
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⑤ (생략)

제6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의 개발사업 협의)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
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
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
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매장유산 --

2. (현행과 같음)

3. -----
-- 매장유산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매장유산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매장유산 유존
지역 -----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이하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라 한다)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표본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 “매장유산 -----

 -----.
 ----- 매장유산 -----

 -----.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 국가유산 보존을 -----

 ----- 국가유산 보존 조치-----
 -----.

1. (현행과 같음)
 3. ----- 매장유산 -----

 4. 매장유산 -----

 ---]
 5. 매장유산 -----
- ② -----

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신 설>

2.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국
가유산 보존 -----

-. -----

-- 국가유산 보존 -----
-- 문화유산위원회의 -----
----- 문화유산위원회의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 시
· 도지정문화유산 -----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

국가유산 보존 -----
----- 문화유산위원회
회-----

----- 매장유산 -----

-----.

④ -----

국가유산 보존 -----

-----.

1. ----- 문화유산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

2. ----- 매장유산 -----

⑤ ----- 국가유산 -----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략)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

----- 문화유산위원회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매장유산 -----

② 매장유산을 훼손-----
----- 매장유산을 발굴-----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⑤ · ⑥ (생략)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하

④ ----- 매장유산-----

1.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 -----

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

1. ~ 4. (현행과 같음)

5. ----- 매장유산 -----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장유산 -----

-----.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매장유산 -----

-----.
-----.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

굴 절차 등) ① -----

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
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
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
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
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발
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
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매장유산 -----

-----.

② -----
매장유산 -----

-----.

③ -----
매장유산 유존지역-----

----- 매장유산을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
치 평가) ① -----
--- 매장유산-----

-----.

1. <u>매장문화재의 가치</u>: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u>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u>: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 주변의 보존 상태 3. <u>매장문화재의 활용성</u>: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u>매장문화재</u>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② (생략) 제14조의2(<u>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u>)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u>매장문화재</u>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u>매장문화재</u>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u>매장문화재</u>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1. <u>매장유산의 가치</u>: 매장유산----- 2. <u>매장유산의 보존</u> ----- <u>매장유산</u>의 내부·외부 ----- <u>매장유산</u> 주변----- 3. <u>매장유산의 활용성</u>: 매장유산----- 4. ----- <u>매장유산</u>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u>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u>) ① ----- 1. ----- <u>매장유산</u>----- 2. ----- <u>매장유산</u>----- 3. ----- <u>매장유산</u>-----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인류학·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② -----

-----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
-----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
-----.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

----- 매장유산이 ---

----- 문화유산위원회-----
-----.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 시·도문
화유산위원회-----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매장유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
----- 매장유산 -----

본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
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
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
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
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
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
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
· 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① -----
----- 매장유산을 --

-----.

② -----

-----.

-----.

1. 매장유산이 -----

2. 매장유산이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
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
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
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
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
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
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

---. -----
----- 매장유산을 -----

-----.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
유권 판정 절차) ① -----
----- 국가유산의 소유권--

----- 국가유
산의 소유자임-----

-----.

② -----

---. ----- 국가유산 ---

다.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

---.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

--- 국가유산으로서 -----

--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
은-----.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① -----

--- 국가유산의 -----

-----.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 국가
유산의 -----

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

-----.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 -----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

을 -----.

1.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 -----

② -----

국가유산을 -----

-----.

-----.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

----- 국가유산

으로서 ----- 귀속대

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

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
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
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
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
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
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
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
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
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
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
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
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
다.

-----.

② ----- 국가유산의 ---

-----.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
상금 등) ① -----

----- 국가유산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
----- 국
가유산이 -----

-----.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제26조(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
----- 국가유산의 범위-----
----- 국가유산의 관리-----

-----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
-- 국가유산”으로 -----
-----.

② ----- 국가유산의 -----

-----.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

-----.

1. 매장유산 -----

2. <u>매장문화재</u>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 (생략) ② (생략)	2. <u>매장유산</u> -----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u>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u>)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u>매장문화재</u>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u>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u>) ----- ----- <u>매장유산</u> --- ----- ----- -----.
제30조(<u>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u>)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u>매장문화재</u>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u>매장유산 기록의 유지·관리</u>) ----- ----- <u>매장유산</u>----- ----- -----.
제31조(<u>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u>)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u>매장문화재</u>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u>매장문화재</u>의 발굴조사	제31조(<u>매장유산의 보호 방안</u>) ① ----- <u>매장유산</u>이 ----- ----- ----- ----- -----. 1. ----- ----- --- <u>매장유산</u>-----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
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
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
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
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2. -----
----- 매장유산-----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지정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
-- 매장유산---

② -----
----- 매장유산이 -----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1. (현행과 같음)

및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
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
공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
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
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
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가. (현행과 같음)

나. -----
-----매
장유산-----

2. ----- 국가
유산 -----.

-----.

3. -----
----- 국가유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매장유산-----

2. 매장유산 -----

3. 매장유산-----

4. 매장유산과 -----

인력 교육	-----
5. 그 밖에 <u>매장문화재</u> 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5. ----- <u>매장유산</u> ----- -----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1. 법 제21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u>문화재</u> 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 ----- -- <u>국가유산</u> ----- -----
2. 법 제24조에 따른 <u>매장문화재</u>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 <u>매장유산</u> -----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u>매장문화재</u> 의 보존조치 평가항목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u>매장유산</u> ----- ----- ----- -----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①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1. ~ 3. (생략)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③ (생략)

제9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

1. ~ 3. (현행과 같음)

4. ----- 무형유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 무형유산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무형유산
과-----

2. 무형유산-----

사한 사람

③・④ (생략)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 ⑥ (생략)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1. ----- 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2. ----- 법 제2조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3. ----- 법 제2조 제1호다목-----

-- 무형유산-----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생략)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

-----.

1. -----

국가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이라

2. (현행과 같음)

3. 국가무형유산-----

4.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
-----.

② -----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

-----.

③ -----

----- 국가무형유산-----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가무형유산

-----.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

-----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1. -----

-- 국가무형유산
2. -----

-----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④ -----
----- 국가긴급보호무
형유산-----

-----.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2. (생략)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

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

----- 국가무형유산

-----.

1. --- 무형유산-----

2. --- 무형유산-----

3. --- 무형유산-----

② -----

-----.

1. --- 무형유산-----

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
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
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
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
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
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
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
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
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
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
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
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
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
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

2. --- 무형유산-----

--

3. --- 무형유산이 -----

③ -----

-----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 국가무
형유산의 기능·예능 -----

-----.

④ 국가무형유산-----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
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
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
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
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
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
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
교육 실적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
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
가능성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

----- “국가
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

-----.

⑤ ----- 국가무형유산---

-----.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 국가무형유산-----

-----.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
유산 -----
--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
유산 -----

3. 국가무형유산 -----

② -----

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
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승교육 중
에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
실현한 수준

2. 3. (생략)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
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
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
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
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
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
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문
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 국가무형유산-----

-----.

1. -----
-- 무형유산-----

2.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무형유산-----

-----.

④ -----

-----.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

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

----- 국가무형유산-----

---.

② -----

---.

1. -----

가. 국가무형유산-----

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 시·도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
의 보유자 -----

2. --- 무형유산-----

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u>무형문화재</u>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u>무형문화재</u>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생략)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군·구까지만 적는다) 나.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략) 제18조의3(<u>국가무형문화재</u> 보유	----- ----- 3. --- <u>무형유산</u>----- ----- -- 4. --- <u>무형유산</u>-----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u>국가무형유산</u>----- ----- ----- ----- - 나. <u>국가무형유산</u>-----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u>국가무형유산</u> 보유자
---	---

자 증서 등의 발급)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u>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u>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u>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u>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u>시·도무형문화재</u>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u>국가무형문화재</u>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국가무형문화재</u> 보유자, 보유	증서 등의 발급) ----- ----- <u>국가무형유산</u>----- ----- ----- ----- <u>국가무형유산</u> <u>보유자</u> ----- ----- <u>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u> -----.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시·도무형유산</u>----- ----- 3. <u>국가무형유산</u> ----- ----- ----- ----- 제20조(정기조사) ----- ----- -----. 1. <u>국가무형유산</u> -----
--	---

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 · 예능 현황 2. (생략) 3. <u>국가무형문화재</u>의 전승자 현황 4. · 5. (생략)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보 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 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 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 3. (생략)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 지원) ① · ② (생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u>국가무형문화 재</u>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 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	----- ----- 2. (현행과 같음) 3. <u>국가무형유산</u>----- -- 4.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1. <u>국가무형유산</u>----- ----- ----- -----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가무형유산</u> ----- ----- -----
---	---

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⑤ (생략)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2. 시·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 ⑥ (생 략)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무형유산 -----

-----.

③ -----

----- 국가무형유산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

----- 국가무형유산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국가무형유산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생략)

⑤·⑥ (생략)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

----.

1. -----
----- 국가무형유산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을 -----

② 국가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을 -----

-----.

③ -----

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 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생략)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 국가무형유산 ---

④ 국가무형유산

⑤

----- 국가무형유산 -----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현행과 같음)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 국가무형유산 -----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5. (생략)

②·③ (생략)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 시·도지사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

② ----- 국가무형유산-----
-----.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심사 등) ① -----

-----.

1. ----- 국가무형유산-----
--

2.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
--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시·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
----- 시·도무형유산-----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의 심
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
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
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
46조에 따른 한국무형문화재진
흥센터(이하 “한국무형문화재
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
뢰할 수 있다.

제33조의2(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
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1.·2. (생략)

- 시·도무형유산위원회-----

-----.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

----- 무형유산 -

-----.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무형유산진흥센
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
터”-----
-----.

제33조의2(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

1.·2. (현행과 같음)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u>무형문화재</u> 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3. ----- <u>무형유산</u> -----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28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에 따른 <u>국가무형문화재</u> 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8. ----- <u>국가무형유산</u> ----- -----
9. 법 제28조제3항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u>국가무형문화재</u> 의 공개 점검	9. ----- <u>국가무형유산</u> ----- -----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44조 및 이 영 제33조의2에 따른 <u>무형문화재</u>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14. ----- <u>무형유산</u> ----- ----- -----
15. 법 제48조에 따른 <u>무형문화재</u> 의 조사 및 기록화	15. ----- <u>무형유산</u> -----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u>국가무형문화재</u>	② ----- ----- ----- <u>국가무형유산</u> -----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 보 업무를 <u>한국무형문화재진흥 센터</u>에 위탁한다.	----- ----- ----- <u>한국무형유산진흥센 터</u>-----.
---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보호기금법</u>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보호기금의 구성) 「문화재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2. (생략)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 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	<u>국가유산보호기금법</u> 시행령 제1조(목적)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구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 1. 2. (현행과 같음)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 ----- 지정문화유산등의 관람료를 기준----- ---- 국가유산보호기금-----

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1.·2. 삭제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생략)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정문화유산등의 -----

-----.

제4조(기금의 용도) -----

-----.

3. 국가유산-----
--

4. 국가유산-----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2. (생략) 3.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생략)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국가유산</u>----- ----- ----- ③ (현행과 같음)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보호법</u>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u>문화재</u>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시행령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1. <u>문화유산</u>을 -----

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u>문화재에</u>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u>문화재의</u>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문화재교육</u>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학교문화재교육</u>: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실시하는 문화재교육</u> 2. <u>사회문화재교육</u>: 법 제22조의 4제1항에 따른 <u>문화재교육지원센터</u>,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u>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u>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	----- ----- 2. <u>문화유산에</u> ----- ----- <u>문화유산의</u> ----- ----- ② ----- <u>문화유산교육</u>----- ----. 1. <u>학교문화유산교육</u>: ----- ----- ----- ----- <u>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u> 2. <u>사회문화유산교육</u>: 법 제22조의 4제1항에 따른 <u>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u>,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u>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u>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 ----- ----- -----.
---	---

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4. (생략)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생략)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6. (현행과 같음)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

-----.

1.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
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
3. -----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4. ----- 문화유산과 -----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 ----- -----.
1.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 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1. <u>문화유산</u>-----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u>문화 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4. ----- <u>문화 유산</u>의 ----- ----- ----- -----
제4조(<u>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 립절차 등</u>)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기본계획</u>에 관한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u>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u>) ① ----- --- <u>문화유산기본계획</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문화재</u>의 보존·관 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u>문화유산</u>----- ----- --

②·③ (생략)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단
(이하 “한국문화재단”이라 한
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한국문화재단은 매 사업연
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
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
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
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
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
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
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유산-----

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생략)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

3. ---- 문화유산-----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① -----

----- 문화유산정보체계-----

-----.

1. 문화유산-----

2. 문화유산-----

3. 문화유산 -----

--

4. -----

문화유산-----

--

5. ----- 문화유산 정보가치-

② -----

----- 문화유산 정보--

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생략)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문화유산위원회-----

2. ----- 시·도문화유산위원회-----
--
3. ----- 문화유산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
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
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③·④ (생략)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
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
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
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
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
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
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

4. 문화유산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정문화유산-----

-- 지정문화유산-----

⑥ -----

--- 지정문화유산-----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
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
뉴얼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
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
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
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
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
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
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
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
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
다.
4.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
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
뉴얼 마련 등) ① -----

----- 문
화유산-----
--.

1. 지정문화유산 -----

2. 지정문화유산 -----

-----.
-----.
3.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제1항-----.

--.
4. 등록문화유산 -----.

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u>문화재</u>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지정문화재</u> 중 동산에 <u>해당하는 문화재</u> 2. <u>등록문화재</u> 중 동산에 <u>해당하는 문화재</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화재 및 재난 시 <u>문화재</u>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 (생략) 제8조의2(<u>문화재</u>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구축·관리하여야 하는 <u>문화재</u>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문화재</u>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 ----- -----. ② ----- ----- --- <u>문화유산</u>----- -----. 1. <u>지정문화유산</u> ----- <u>해당하는 문화유산</u> 2. <u>등록문화유산</u> ----- <u>해당하는 문화유산</u>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u>문화유산</u>-----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u>문화유산</u>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 ----- ----- <u>문화유산</u> <u>방재</u> ----- -----. 1. <u>문화유산</u> ----- --
---	---

2. 문화재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 문화재 안전관리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2. 문화유산 -----

3. 문화유산 -----

4. ----- 문화유산 피해

② (현행과 같음)

③ -----
----- 문화유산 방재 -----

-----.

<삭 제>

5.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
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
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
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
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
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
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
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
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삭 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

----- 문화유산교육 -----

-----.

1. ----- 문화유산교육 -----
2. 문화유산교육 -----

3. <u>문화재교육</u> 관련 기관 및 법 인·단체 현황 4. <u>문화재교육</u> 시설 현황 5. <u>문화재교육</u>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u>문화재교육</u>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생략) 2. 수시조사: 문화재청장이 <u>문화재교육</u> 관련 정책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생략) 제10조의3(<u>문화재교육지원센터</u>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u>문화재교육지원센터</u>(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삭제	3. <u>문화유산교육</u> ----- ----- 4. <u>문화유산교육</u> ----- 5. <u>문화유산교육</u> ----- 6. ----- <u>문화유산교육</u> -----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문화유산교육</u>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u>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u>의 지정요건 등) ① ----- ----- <u>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u>----- ----- ----- ----- -----.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 것
가.·나. (생 략)

다. 문화재교육에 필요한 교
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
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
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
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
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
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
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생 략)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문화유산교육-----

3. -----

가. -----
----- 문화유산
관련 -----

----- 문화유산교
육 -----

나. -----
----- 문화유산
관련 -----

----- 문화유산교
육 -----

다. -----
----- 문화유산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0조의4(문화재교육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문화재재단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생략)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 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 (생략)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

----- 문화유산교육-----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① -----

-----.

1. 국가유산진흥원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5. (현행과 같음)

6. ----- 문화유산교육-----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 제4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의6(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② -----
----- 문화유산교육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문화유산수증
심의위원회 -----

-----.

② ----- 문화
유산 전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
----- 문화유산
지능정보화 -----

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3.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재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 문화재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지원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 3. (생략)

---.

1. 문화유산지능정보화-----
--
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

3. 문화유산지능정보화 -----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

5. 문화유산데이터 -----

6. -----
-- 문화유산의 -----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8(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1. 문화재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화를

4. ----- 문화유산데이터-----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

-----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

-----.

1. 문화유산-----

2. 문화유산을 -----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4.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위하여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 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 문화재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2. 문화재데이터의 유통·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3.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데이터의 가공·활용

제10조의9(문화재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재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1. 2. (생략)
3. 문화재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학과가 설치된 대학

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

②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
--.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2. 문화유산데이터-----
3.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
-----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활용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① -----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
-----.

1. 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 -----

4. <u>문화재</u> 또는 <u>지능정보기술</u>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u>문화재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u>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11(<u>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u>)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한국문화재단</u>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u>문화재데이터</u> 관련 사업의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u>문화재데이터</u>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u>문화재지능정보기술</u>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u>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u>의 구축·운영 제11조(<u>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u>)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	4. <u>문화유산</u> ----- ----- ② <u>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u>----- ----- --. 제10조의11(<u>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u>) ----- ----- ----- <u>국가유산진흥원</u>-----. 1. ----- <u>문화유산데이터</u> ----- -- 2. ----- <u>문화유산데이터</u>----- ----- 3. ----- <u>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u>----- ----- 4. ----- <u>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u>----- 제11조(<u>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u>) ① ----- -----
---	---

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
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
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
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
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
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
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 사적 -----
----- 국가민속
문화유산-----
-----.

② -----
----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
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
위원회-- 문화유산위원이나 --

----- 문화유산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
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
로 -----
-- 문화유산위원회-----

-----.

⑤ -----

문화유산위원회----- 국
가지정문화유산 -----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
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
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
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
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준) ① -----
----- 사적 및 국가민
속문화유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

-----.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
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 3.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
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
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
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
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
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

1. -----
-- 지정문화유산-----

2. · 3.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
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④ -----

문화유산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지정문화유산-----

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

-----.

1. (현행과 같음)

2. -----

----- 문
화유산이나-----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 국가지정문화
유산을 -----

-----.

1. 국가지정문화유산-----

--

2. <u>국가지정문화재</u> 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2.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3. <u>국가지정문화재</u> 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u>국가지정문화유산</u> 과 ----- ----- -----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u>문화재</u> 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 ----- <u>문화유산</u> 이 ----- ----- ----- ----- ----- ----- -----.
제19조(임시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u>중요문화재</u> 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u>사적</u> , <u>명승</u> 또는 <u>천연기념물</u> , 법 제26조에 따른 <u>국가민속문화재</u> 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임시지정) ----- ----- <u>중요문화유산</u> 으로 ----- ----- ----- <u>사적</u> ----- ----- ----- <u>국가민속문화유산</u> 으로 ----- -----.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
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
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
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
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
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생 략)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
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
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
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
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

의 수립) ① ----- 국가
지정문화유산을 -----
-----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

----- 문화유산별 -----

-----.

② -----
----- 문화유산-----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3. 문화유산-----

4. 문화유산-----

5. 문화유산-----

6. ----- 문화유산-----

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③ -----

----- 문
화유산의 -----
-----.

제21조(허가절차) ① -----

----- 국가지정문화유
산-----

-----.

② -----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채취·사육·도살(屠殺)하는 행위

----.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유산으로서 -----
-----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

3. -----
--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

-----.

1. 국가지정문화유산-----

<삭 제>

나.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소각(燒却)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 자. (생략)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3.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 자.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국가지정문화유산---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u>국가지정문화재</u>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u>국가지정문화재</u>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u>국가지정문화재</u>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u>국가지정문화재</u>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u>국가지정문화재</u>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u>국가지정문화재</u>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u>국가지정문화재</u> 보존에 영향을 미칠	----- 나.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다.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 ----- 라.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마.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2. <u>국가지정문화유산</u>이 ----- ----- ----- ----- 3. <u>국가지정문화유산</u>과 ----- ----- <u>국가지정문화유산</u> 보존-----
--	--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
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동
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
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
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
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
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
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다른 장소
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
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
출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
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삭 제>

5. -----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

----- 국
가지정문화유산의 -----

③ -----
-----.

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

2. 국가지정문화유산-----

--
3. -----
----- 국가지정문화유산-----

--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추락 등으로 <u>국가지정문화재</u>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u>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u>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u>문화재의</u>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4. -----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 ----- ----- ----- ----- ----- ----- ----- -----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행위 2. ----- ----- ----- <u>문화유산의</u> ----- ----- ----- 3. ----- ----- -----
---	--

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 아. (생략)

4. (생략)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 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 국가 지정문화유산을 -----
-----.

가. ~ 아.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은 ----

<삭제>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 문화유산-----

-----.

1. 문화유산위원회-----

2. -----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u>문화재</u>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 ----- <u>문화유산</u> ----- -----
4. <u>문화재</u>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u>문화유산</u> -----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u>문화재</u>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u>문화재</u>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7. ----- <u>문화유산</u> 관련 ----- ----- -- <u>문화유산</u> 에 ----- ----- -----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u>문화재</u> ,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	제22조(허가서) ----- ----- ----- <u>문화유</u> <u>산</u> , ----- ----- ----- ----- ----- ----- ----- ----- ----- -----

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단서 삭제>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에 -----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에서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소각
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25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자는 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삭 제>

<삭 제>

<u>당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u>2. 원산지 증명서</u> <u>3. 해당 동물의 사진</u>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u>국가지정문화재</u>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u>문화재</u>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략)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u>문화재</u>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 ----- -- <u>국가지정문화유산</u>----- ----- ----- -----. 1. <u>문화유산</u> ----- ----- ----- -- 2. (현행과 같음) 3. ----- ----- <u>문화유산</u> ----- -----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
--	---

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
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 국가지정문화유산-----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 ① -----

----- 국가지정문화유산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
유산-----

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
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
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가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illegible]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 국가등록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
산은 -----

-----, ----- 국가
등록문화유산-----

1. --- 문화유산이 -----

2. --- 문화유산이 -----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
는 행위

가. 나. (생략)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53
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
된 면적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_____

_____ 국가등록문

화유산으_____

제3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

----- 국가등록문화
유산-----

-----.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③ -----

-- 문화유산, -----

-----.

제3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재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일반동산문화유산-----

1.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 -----

문화유산감정위원-----
-----.

② -----
----- 문화유산감정위원-----

-----.

1. 문화유산위원회-----

2. -----

동산문화유산 -----

3. 동산문화유산 -----

-- 문화유산 분야-----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 동산문화유산 -----

5. 동산문화유산 -----

6. 동산문화유산 -----

7. 동산문화유산 -----

③ -----

----- 문화유산감정위원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방안) ① -----

----- 문화유산-----

-----.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
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
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
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
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
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1. 일반동산문화유산-----

2. 일반동산문화유산-----

3. -----
문화유산과 -----

4. 일반동산문화유산-----

--

② -----

----- 문화유산에 --

-----.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

-----.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 및 국외문화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국외문화재재단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

② 국외문화유산재단-----

-----.

③ -----

----- 국외문화유산재단 -----

-----.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

----- 국외문화유산재단의 -----
-----.

⑤ 국외문화유산재단-----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
다.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
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
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
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
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
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
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

--.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① ----- 문화유
산매매업 -----
----- 유형문화유산
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
서 -----

-----.

② ----- 문화
유산매매업 -----

-----.

③ ----- 문화
유산매매업자-----

----- 문화유산의 -----

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1조의2(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재를 말한다.

1.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재일 것

2.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일 것

제41조의3(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중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

--- 문화유산을 ---.

1. -----

----- 문화유산일

2. -----
----- 문화유산돌봄사
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

----- 문화유산일 -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앙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41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
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
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
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
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
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
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문화재돌봄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
두 갖추 것
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의 운영) ----- 중앙문
화유산돌봄센터-----

----- 지역문화유
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
산돌봄센터”-----

-----.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의 지정) ① -----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돌봄사업-----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실

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생략)

②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

-

나. 문화유산 -----

3. (현행과 같음)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③ -----

----- 지역문

화유산돌봄센터-----

---.

④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

----- 지

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를 지
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제41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
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
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80조의5
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1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12
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항
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지역문
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
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6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
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

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의 지정취소) ① -----
----- 지역문화유산돌봄센
터-----
-----.

② -----
----- 지역문화유산돌봄
센터-----

-----.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의 평가) ① -----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② -----

----- 지역문
화유산돌봄센터-----
-----.

③ -----

----- 지역문화

재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생략)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공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제한

7. ~ 11. (생략)

② (생략)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유산돌봄센터-----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 문화유산에 -----
-----.

1. ~ 5. (현행과 같음)

6. ----- 국가지정 문화유산-----

7.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을 -----
-----.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u>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u>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 ----- ----- ----- ----- ----- ----- <u>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u> ----- ----- ----- -----
② (생략)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에 따른 <u>문화재매매업</u>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1. ----- <u>문화유산매매업</u>----- ----- 2. -----

<u>문화재매매업</u>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생략) 4. 법 제80조에 따른 <u>문화재매매업</u>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u>문화재교육지원센터</u>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u>문화유산매매업</u>----- ----- 3. (현행과 같음) 4. ----- <u>문화유산매매업</u>----- --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u>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u>-----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령</u> 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 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신 설>

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

----- 지정문화유산의 -----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26조(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

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
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
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
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
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

본계획 수립 등) ① -----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
리등”-----

-----.

1. 국가유산수리등-----

--

2. 국가유산수리등-----

--

3. 국가유산수리등-----

4. ----- 국가유산수리등---

② -----

----- 국가유산수리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생략)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국가유산수리등 -----
2. 국가유산수리등-----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수리등-----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수리 등-----
-
-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

-----.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생략)

② ~ ⑥ (생략)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
----- 국가유산수리-----

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 ---
----- 국가민속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제12조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국가유산수리등-----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
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③·④ (생략)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
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 5. (생략)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
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

2. 국가유산수리등-----

3. ----- 국가유산수리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
----- 국
가유산의 -----

----- 국가유산수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동산문화유산 분야
의 국가유산수리-----.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

----- 국가유산수리-----

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2. (생략)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

1. ----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1. 국가유산수리-----

2. 국가유산수리-----

--

제6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 국가유산수리등-----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3. (생략)

② (생략)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

-----.

제6조의3(실태조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②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 ~ 6.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3. (생략)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

-----.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1. 국가유산수리 -----

2.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③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

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생략)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생략)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4.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

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②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③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④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 2. (생략)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 · 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 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1. · 2.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
----- 국가유산수리 분야-----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②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추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다. (생략)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생략)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

-----.

1. -----
----- 국가유산수리업등-----

2. -----

가. ----- 국가유산수리협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 국가유산수리업-----

마.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12조의2(문화재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

3.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
----- 종합국가유산수리

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써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3. 종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를 --.

1. ----- 국가유산수리를

 ----- 종된 국가유산수리
2. -----
 --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
 ----- 부분의 국가유산수리
3.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

 -----.

1. <u>문화재수리등</u> 의 구체적 내용	1. <u>국가유산수리등</u> -----
2. <u>문화재수리등</u> 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2. <u>국가유산수리등</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재수리등</u> 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u>국가유산수리등</u> ----- ----- ----- --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u>문화재수리등</u> 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5. ----- ----- <u>국가유산수리등</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 보험료, 그 밖에 해당 <u>문화재수리등</u> 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7. ----- ----- ----- ----- <u>국가유산수리등</u> ----- ----- -----
8. 해당 <u>문화재수리</u> 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 에 관한 사항	8. --- <u>국가유산수리</u>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u>문화재수리등</u> 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0. <u>국가유산수리등</u> ----- -----

11. ~ 13.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생략)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 국
가유산수리등-----

----- 국가유산수리 표
준하도급계약서-----
-----.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감리업자가 -----
-- 국가유산수리로서 -----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감리업자
에게 -----
-----.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

1.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1. -----

----- 국가유산수리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수리 -----

-----.

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
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
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
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
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
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
당 국가유산수리----- 국
가유산수리 현장-----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
가유산수리 현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1. -----

----- 국가
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
리기술자-----

2. -----

----- 국가유산수리 예정
금액----- 국가유

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 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3. -----
----- 국가유산수리 예정
금액-----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4. -----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
-----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

③ -----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⑤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5. (생략)

제18조의2(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⑤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

-----.

⑥ -----
-----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⑦ -----
----- 국가유산수리업 -----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 ----- ----- ----- -----.
1. <u>문화재수리</u>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다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u>국가유산수리</u> 등-----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수리</u> 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 ----- <u>국가유산수리</u> ----- -----.
제19조의2(<u>문화재수리</u>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제19조의2(<u>국가유산수리</u>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 ----- -----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의 연혁, 구조, 양식,

-----.

1. 국가유산수리-----

--

2. 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

--

3.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산수리 과정-----

-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

--.

1. 국가유산 -----

보존상태 및 주변상황 등 수
리대상의 현황

2. 문화재수리의 내용

2의2.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다
음 각 목의 사람의 명단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다. 그 밖에 문화재수리와 관
련하여 감독·설계·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자
문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기록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
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
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
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보
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

2. 국가유산수리---

2의2.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다. ----- 국가유산수리----

3. 국가유산수리-----

4. 국가유산-----

5. (현행과 같음)

6. ----- 국가유산수리----

② ----- 국가유산수리 -

③ ----- 국가유산수리

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4(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생략)
 2.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범위를 수급인과 협의할 것
 3.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문화재수리 정보의 공

-----.

제19조의4(국가유산수리 현장의

- 공개) ① -----
----- 국가유산수리 -----

-----.

- ② -----
----- 국가유산수리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 현장-----

--

3. 국가유산수리 -----

- ③ -----
----- 국가유산수리 -----

-----.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 문화재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문화재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

공개) -----

----- 국가유산수리

리 -----

-----.

1. 국가유산수리 -----

--

2. 국가유산수리 -----

--

3. ----- 국가유산수리 -----

--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

----- 국가유산감리

업자-----

----- 국가유산수리-----

-----.

1. -----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

수리. -- 동산문화유산-----

-----.

2.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 국가유

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

산수리-----

-- 국가유산의 --

② -----

----- 국가유산수리 중 -----

국가유산수리에 -----

1. -----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

수리. -- 동산문화유산-----

2.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 국가유

산수리로서 -----

-----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과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1. 상주문화재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문화재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

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 국가유산감리원은 -----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감리원

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 -----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
감리원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
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
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
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감리업자(재단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
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
야 한다.

1. 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문화재감리원 또는 비상
주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2.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
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 국가유
산감리원

② -----
----- 국가유산감리원 ---
-----.

③ ----- 국가유산감리
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
유산감리 -----

-----.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

----- 국가유산감
리원-----
-- 국가유산수리 -----
-----.

1. -----
상주국가유산감리원 또는 비
상주국가유산감리원-----
2.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의 -----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상주문화재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문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4.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문화재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문화재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해당하

----- 국가유산수리 금액-----

----- 국가유산감리원-----.

3.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 -----
-----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

4. ---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 ---
-----.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산수리가 -----

----- 국가유산수리 현장-----.

② 국가유산감리업자-----

----- 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 -----.

1. 국가유산수리의 -----

는 문화재감리원으로서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문화재감리원을 문
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문
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
당하는 문화재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
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문화재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
을 해당 종류의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
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문화재감리원을 추가로 배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

-- 국가유산감리원으로서 --

-----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
----- . --- 국가
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
리 금액-----
---- 국가유산감리원-----
-----.

2.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감리
원 외----- 국가유산감리
원을 ----- 국가유산수리
기간 -----
----- . -----

국가유산감리원-----
-----.

가. -----
----- 국가유산수
리 예정금액----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나. -----

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이 5억원 미만인 문화재수
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
하는 문화재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문
화재감리원을 다른 문화재수
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
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
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
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
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
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

-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미만인 국가유산
수리

3. -----
-- 국가유산감리원이 -----
----- 국
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
산수리 -----

③ -----
----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
산감리원-----
--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

-----.

④ 국가유산감리업자-----
-----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

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

----- 국가유 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

-----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

⑤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감리원-----

⑥ ----- 국가유산감리 원-----

제23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등) ① -----

----- 국가유산감리원-----

--- 국가유산수리 -----

② -----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 -----

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 국
가유산감리원의 변경-----

----- 국가유산감리원
에게 -----
-----.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수리---.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
--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
-----.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 국가유산수리등이나 국가유산수리협회 -----

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
-- 국가유산수리협회 -----
-----.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수리협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유산수리협회-----

-----.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생략)

2. (생략)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

----- 국가유산수리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

-----.

② 국가유산수리-----

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생략)

----.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

-----.

1.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

-----.

1. 국가유산수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u>문화재수리업자</u> 또는 우수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우수 <u>문화재수리업자</u> 또는 우수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u>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	<u>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u> ② ----- ----- ----- <u>국가유산수리업자</u> ----- ----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u>---- ----- -----. 1. (현행과 같음) 2. --- <u>국가유산수리업자</u> ---- --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u>---- ----- ----- 3.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u>----- ----- ----- -----. ② ----- ----- -----
---	--

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한다.

1. ~ 4. (생략)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

1.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③ -----

--- 국가유산수리협회 -----

--.

1. ~ 4. (현행과 같음)

5. ----- 국가유산수리 -----

--

6. ----- 국가유산수리업자등 -----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7. ----- 국가유산수리 -----

축·운영 및 공개

④ (생략)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유산수리 -----

-----.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국가유산수리협회 ---

-----.

1.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생 략) 4. 법 제14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u>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u>문화재수리</u> 능력의 평가·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자</u>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 및 <u>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u>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u>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u>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u>문화재수리협회</u>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유산수리업</u>등----- 5. ----- <u>국가유산수리</u> ----- ----- 6. ----- <u>국가유산수리업자</u>등----- ----- <u>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u>----- ----- 7. ----- <u>국가유산수리업</u>----- ----- 8. ----- <u>국가유산수리업</u> ----- ----- ② <u>국가유산수리협회</u>----- ----- ----- ----- ----- ----- -----
---	--

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u> 의	1. ----- <u>국가유산수리</u> -
제한: 2015년 1월 1일	-----
2. 제12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u>	2. ----- <u>국가유산수리</u>
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	<u>업등</u> -----
일	--
2의2. (생략)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기</u>	3. ----- <u>국가유산수리</u>
<u>술자</u> 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	<u>기술자</u> -----
5년 1월 1일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 및 별표 10에 따른 <u>문</u>	5. ----- <u>국</u>
<u>화재감리원</u> 의 업무 범위: 2015	<u>가유산감리원</u> -----
년 1월 1일	-----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6. -----
1에 따른 <u>문화재감리원</u> 의 배	----- <u>국가유산감리원</u> ----
치기준: 2022년 1월 1일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위원회 규정</u>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재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 ⑤ (생략)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u>문화유산위원회 규정</u>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 -----. 제2조(구성)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문화유산위원회-----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의 ----- -----.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12호의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다만, 제12호의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9호의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12호의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 · 6. 삭 제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

-----.

2. 건축유산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유산 -----.
----- 궁능유산분과위원회 -----
--.

3. 동산유산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유산 중 ----- 유형문화유산에 -----.
----- 궁능유산분과위원회 -----.

4. ----- 법 제2조제1항제3호-----
-----, ----- 근현대유산분과위원회 -----
----- 궁능유산분과위원회 -----.

7. 자연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12호의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다만, 제12호의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재,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등의 유지·관리 및 지원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

----- 궁능유산분과위원회 -----.

8.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9. 근현대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

----- 국가등록문화유산-----.

----- 궁능유산분과위원회-----.

10. 민속유산분과위원회: ----- 민속문화유산에 -----

11.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2. <u>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u> : 궁 능유적본부장의 소관 <u>문화재</u> <u>에</u> 관한 사항. 다만, 법 제8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u>궁능유산분과위원회</u> : ----- ----- <u>문화유</u> <u>산 및 자연유산에</u> ----- . --- ----- -----.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⑥ (생략)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에서 <u>문화재</u> 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 던 자 2. <u>문화재</u> 의 보존·관리 및 활 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④ (생략)	제11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1. ----- -- <u>문화유산</u> ----- ----- ----- --- 2. <u>문화유산</u>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 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제12조(해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u>문화재매매업자</u>,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자</u>, <u>문화재실측설계업자</u>, <u>문화재감리업자</u>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u>매장문화재</u>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 6. (생략) 7. <u>시·도문화재위원회의</u>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u>문화재에</u>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u>문화재위원회</u>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1. (현행과 같음) 2. ----- <u>문화유산매매업자</u>,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국가유산수리업자</u>, <u>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u>, <u>국가유산감리업자</u> ----- ----- <u>매장유산</u> ----- ----- ----- 3. ~ 6. (현행과 같음) 7. <u>시·도문화유산위원회</u>----- ----- 제13조(윤리강령) ----- ----- <u>문화유산에</u> ----- ----- <u>문화유산위원회</u> -----.
--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문화재의</u>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 ----- <u>국가유산의</u>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u>「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u> 1. ~ 9. (생략)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 ----- ----- ----- -----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u> 1. ~ 9. (현행과 같음)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u>「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u>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u>

현황 3. (생략)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u>문화재</u>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u>문화재</u>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 3. ~ 7. (생략) ③ ~ ⑤ (생략)	-- 3.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 ----- ----- 국가유산과 ----- ----- --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위원)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 -----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u>역사·문화·문화재·도시계획·경관·지역개발</u> 또는 관광 등(이하 이 항에서 “역사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1. ----- <u>역사·문화·국가유산·도시계획·경관·지역개발</u>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 ----- ----- ----- -----.

1. (생 략) 2. <u>문화재 관람료</u> 등 <u>문화재 활용</u>에 따른 수입금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 관람료</u> ----- -- <u>국가유산 활용</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략) 4. 역사문화환경(<u>문화재</u>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u>문화재와</u>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5.·6. (생략)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유산</u> ----- ----- ----- <u>국가유산과</u> ----- ----- ----- ----- 5.·6. (현행과 같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대학원) ① (생략)	제6조(대학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1. ----- 국 가유산----- ----- -----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2. ----- 국 가유산을 ----- ----- -----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3. ----- 국 가유산을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0조(입학전형) ①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문화재수리기
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
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
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
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
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술자·문화재감리원 및 설계
심사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
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
영한다.

1.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생 략)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 -----

----- 국가유산
분야 -----
-----.

② -----

-----.

1. ----- 국가유산-----

2. (현행과 같음)
3. -----

문화재 교육	국가유산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2) 481 - 3191